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82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의자 : 위성곤 · 혀영 · 임오경
윤준병 · 박희승 · 박지혜
박정현 · 서영교 · 김한규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경제활력 저하가 심각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하지만 관광단지는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조성 중 선분양이 어렵고 준공 이후 투자금 회수 시기 및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고 있으나, 재산세 경감은 별도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과도한 실정임.

이에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

하여 줌으로써, 관광단지에 대한 투자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토지(조성사업의 전부를 완료하여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조성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⑥ (생략) <u><신 설></u></p>	<p>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토지(조성사업의 전부를 완료하여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u> <u>1.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 또는 조성 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u></p>

나 조성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관광 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 계획의 승인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조성계획 승인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